대 법 원 판 결 례

형사

대법원 제1부
2004도6408

가. 업무방해
나. 명예훼손

【당 사 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4노569 판결

【판 결 선 고】
2004.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 ·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예).

사회상규 벗어난 지나친 ' 1인시위 ' 는 업무방해죄 해당

적법한 쟁송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 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 병원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 ·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며 사회상규에 위배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 ·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예).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판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 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 ·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 재 식
대법관 이 용 우
주 심 대법관 이 규 홍
대법관 김 영 란

【9면에서 계속】

2004도5652 (주심 고현철 대법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 정당의 구성원 ' 의 의미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범죄수익의 의미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이 정치자금을 받은 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 정당의 구성원 ' 이라 함은 '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의 기구에 소속해 있는 임직원 ' 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 이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도6261 (주심 배기원 대법관)
사립학교법위반 **상고기각**

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 의 범위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된 ' 유아교육법 '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51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 중 교지 · 교사 · 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園地) · 원사(園舍) · 유원장(幼園場)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 · 원사 · 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 · 원사 · 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 중 지상 1, 2층만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위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서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본 사례).

2004도6717 (주심 배기원 대법관)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무도교습장이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 학원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피고인이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2]의 제9호 소정의 '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 에 해당하지 않는 사교춤을 교습한 경우라도 그 시설 및 교습방법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사교춤을 교습한 것으로써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 학원 ' 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령 소정의 학원설립등록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위 법령 위반이 되고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무도학원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축 · 법률신문 창간54주년

春川地方辯護士會 東草支會

辯護士 朴炯洙 電話(033)(635)0084 동명빌딩3층
속초시 동명동 280의2

辯護士 鄭芳秀 電話(033)(633)7766
속초시 동명동 450의112

辯護士 李在洛 電話(033)(633)3635
속초시 동명동 450의50

辯護士 李鍾植 電話(033)(636)6231
속초시 동명동 466의58

辯護士 趙東龍 電話(033)(635)2868
속초시 청학동 482의9

辯護士 金洋一 電話(033)(635)1384
아남프라자905호
속초시 교동 737의7

辯護士 韓準熙 電話(033)(631)7200
속초시 동명동 458의10

辯護士 具本石 電話(033)(635)0088
아남프라자 1407호
속초시 교동 737의7

辯護士 金熙根 電話(033)(637)8572
동명빌딩3층
속초시 동명동 280의2

辯護士會 總務 · 監事 · 支會長